

## 필립스 - 구매 일반조건

### 1. 정의

이 문서에서: (a) "계열회사"라 함은 (i) 필립스의 경우, Koninklijke Philips N.V. 및 (ii) 필립스 및 공급자의 경우, Koninklijke Philips N.V. 또는 공급자가 현재 또는 향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 기준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그밖에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의 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여타 모든 회사 및 법인을 의미하며, 필립스의 경우, 필립스의 계열회사는 편의상 적격구매처(Eligible Buying Locations) 목록 (<http://www.philips.com/about/company/businesses/suppliers/ebL.page>)에 기재될 수 있다. (b)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 제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c) "APAC"이라 함은 중동, 아시아 및 기타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를 의미한다. (d) "상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및 패키지를 포함한 유무형의 상품을 의미한다. (e) "지적재산권 등"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권, 실용모델,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데이터베이스권, 영업비밀, 정보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보호권, 반도체 IC 토포그래피 및 기타 등록, 위 권리의 출원, 갱신, 연장, 결합, 분할, 유지 또는 재발행 또는 기타 모든 관할권의 법률, 양자협약 또는 다자협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집행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f) "LATAM"이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를 의미한다. (g)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필립스의 전현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및 피부양자, 고객, 소비자, 공급자, 협력사 및 계약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h) "필립스"라 함은 필립스 발주서에 기재된 구매 계열회사인 Koninklijke Philips N.V.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필립스의 여타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i) "처리"란 개인정보에 수반 또는 관련하여 수행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생성, 접근, 수집, 기록, 체계화, 저장, 로딩, 사용, 적용 또는 변경, 추출, 참조, 표시, 사용, 공개, 전파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 정렬 또는 결합, 접근 통제, 삭제 또는 폐기 (이하 "처리") 등을 포함하며 자동화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j)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란 (1) 소프트웨어를 사용, 변경 및/또는 배포를 하기 위하여: (i) 소스 코드 양식으로 공개되거나 배포되고; (ii) 파생 작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으며; (iii) 지적재산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배포되며; 및/또는 (2) (1)에 명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거나 (1)에 명시된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되거나 또는 고정적 또는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k) "서비스"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필립스를 위하여 이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l) "공급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각 개인 또는 법인(관련될 경우 그 계열회사 포함)을 의미한다. (m) "제작물"이란 필립스를 위하여 본 계약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공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작 또는 취득한 모든 작업 결과물(미래의 작업 결과물 포함) 및 기타 데이터, 레포트, 작업물, 발명, 노하우,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장비, 장치, 관행, 프로세스, 방법, 초안, 프로토타입, 제품 및 그 외 작업물 또는 중간 작업물을 의미한다.

### 2. 계약의 성립

- 2.1 본 구매 일반조건은 필립스가 발행하는 관련 구매발주서와 더불어 필립스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청약조건을 명시한다. 공급자가 묵인, 통지, 물품의 인도 및/또는 계약의 이행 등으로 필립스의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은 본 계약서, 구매일반조건, 관련 구매발주서 및 부속서류로 구성된다. 필립스는 공급자가 제안하는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추가 안에 합의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필립스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공급자의 진술 또는 서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등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2 필립스는 공급자의 일반 판매조건 및 제안, 견적, 가격리스트, 승인서, 청구서, 포장내역 또는 공급자가 사용하는 유사 문서에 기재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이거나 상이한 조건 또는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본 구매 일반조건은 이행과정, 거래과정 및 거래관습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2.3 필립스의 청약에 대한 승낙 과정에 소요되는 공급자의 비용은 모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3. 시간 엄수

본 계약에서 공급 기일 등의 시간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하며, 본 계약에 언급된 모든 날짜는 확정적이다. 공급자가 납기일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의무 이행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서면으로 필립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상품의 인도

- 4.1 서면에 의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해상운송이 FOB(지정 선적항)로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은 FCA(지정 발송항 내지 발송지)(Incoterms 2010에 정의된 바에 따름)로 필립스가 지정하는 최종 목적지에 운송된다.
- 4.2 상품 인도는 적용되는 Incoterm에 따라 완료하되, 이는 상품의 수락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4.3 공급자는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필립스에게 해당되는 모든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한다. 필립스에 대한 각 상품의 인도 시에는 최소한 (i) 해당주문번호, (ii) 필립스 부품번호, (iii) 선적량 및 (iv) 선적일이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 4.4 공급자는 합의된 인도일자 이전에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도하지 아니한다. 필립스는, 공급자가 인도 방식 및 시간 또는 선적율을 위반한 경우 상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공급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필립스는 본 계약에 따른 인도 이전에는 제조, 설치, 조립 기타 상품과 관련된 작업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5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직접 이행하거나 공급자를 대신하여 이행되는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기타 작업은 우수한 기술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 4.6 공급자는 운송중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을 효율적으로 하역, 처리 및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상업적 관행 및 필립스의 세부지시 사항에 따라 상품을 포장, 표시 및 선적하여야 하고, 모든 상품에 목적지가 필립스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적용되는 Incoterms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상품을 (적용되는 Incoterm에 따른 인도 전에) 적절하게 보존, 일괄포장, 처리 또는 포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필립스는 그러한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하여 관련된 공동 운송업체에게 청구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 5. 상품의 변경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가공, 설계변경, 제조공정 변경(지리적 위치 포함, 상품의 전기적 성능, 기계적 형태 또는 조화, 기능, 환경적 적합성, 화학적 특성, 수명, 신뢰도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또는 공급자의 품질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포함하여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아니한다.

### 6. 상품의 검수, 평가, 승인 거절

- 6.1 필립스에 의한 상품의 검수, 평가 또는 대금 지급은 상품의 수락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필립스에 의한 상품의 검수, 승인 또는 대금 지급은 공급자를 본 계약에 의한 의무, 진술 또는 보증으로부터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 6.2 필립스는 언제라도 상품에 대한 제조과정이나 상품을 검수할 수 있다. 필립스의 검수나 평가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 검사인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한다.
- 6.3 필립스가 상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필립스는 이러한 거절 의사를 공급자에 즉시 통지하고, 제11조를 적용한다. 공급자는 상기 통지로부터 2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수거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해당 기간 내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필립스는 필립스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적으로 보유하는 여타 권리 또는 구제책과 별개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거나, 공급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상품을 폐기할 수 있다. 필립스가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필립스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6.4 샘플 검수 결과, 물건의 일부가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필립스는 추가 검사 없이 전체 선적분 또는 로트를 거절하고 반송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선적분 또는 로트의 전 품목을 검사한 후 부적합품 일부 또는 일체를 거부하고 반송(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승인)하면서 공급자에 해당 검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7. 서비스의 이행

- 7.1 공급자는 서비스에 충분히 숙련된 종업원을 고용하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에 적합한 기술과 주의로 서비스를 이행한다.
- 7.2 공급자는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위하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7.3 서비스의 수락은 필립스의 서면 확인에 의해서만 승인된다. 필립스가 서비스 및/또는 제작물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제 11조가 적용된다. 필립스는 공급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공급자는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수정, 변경, 및 첨가 등을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8. 대금; 지급

- 8.1 구매발주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Incoterm 규정에 따라 위험이 필립스에 이전되는 시점에 필립스에 이전된다.
- 8.2 본 계약서 상 명시된 가격은 모두 고정가격이다. 공급자는 해당 가격이 공급자가 유사한 상품 수량 또는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최저가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8.3 (i)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VAT), 판매세, 물품, 용역 소비세(GST), 소비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한 총 금액이다. (ii) 본 계약상 거래가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에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견적된 가격에 추가하여 필립스가 지급한다. 공급자는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을 해당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인도가 완료되면 공급자는 (i) 필립스 구매발주서 번호 및 (ii) 필립스가 해당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고 모든 법 및 회계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를 발행한다. 단, 청구서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필립스의 면세신청 가능 여부 및 그 한도를 필립스에 통지한다.
- 8.4 모든 라이선스 비용은 가격에 포함된다.
- 8.5 필립스에 의한 상품, 서비스 및/또는 제작물의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발주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a) 필립스 발주처가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청구서 수령 후 60일 이내; 또는 (b) 필립스 발주처가 아시아-태평양 또는 남미지역(아르헨티나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양식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95일 이내; 또는 (c) 필립스 발주처가 전 세계 다른 지역 또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양식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65일 이내.
- 8.6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필립스는 공급자에 대한 통지 후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8.7 필립스 및 그 계열회사는 언제나 필립스 계열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본 계약 또는 여타 계약에 의하여 필립스

계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공급자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한다.

- 8.8 공급자는 필립스가 공급자에 지급할 금액을 필립스 계열회사 및/또는 필립스가 지정한 제3자가 필립스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대금 지급을 필립스가 직접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공급자에 대한 필립스의 대금 지급 의무는 해당 법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 상당만큼 자동적으로 충족 및 소멸된다.

## 9. 보증

9.1 공급자는 필립스 모든 상품 및/또는 제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 (a)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새로이 제조된 상품이며, 매매가 가능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디자인, 재료, 구성, 세공에 있어 일체의 하자가 없는 상태이다;
- (b) 본 계약에 따른 사양, 승인된 샘플 및 기타 일체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한다;
- (c) 모든 필수 라이선스는 유효하며, 해당 라이선스의 범위는 상품 용도를 적절히 포함하며, 일체의 라이선스에는 양도 및 2차 라이선스 허여 권리가 포함된다;
- (d) 일체의 유지권 및 담보 설정이 없는 상태이다;
- (e) 설계, 제조 및 운송 관련 법령(노동법을 포함), 규정,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한 EC 지침 2001/95 및 당시 시행되던 공급자 지속가능성 선언(Supplier Sustainability Declaration; [http://www.philips.com/shared/assets/company\\_profile/downloads/EICC-Philips-Supplier-Sustainability-Declaration.pdf](http://www.philips.com/shared/assets/company_profile/downloads/EICC-Philips-Supplier-Sustainability-Declaration.pdf))를 준수한다;
- (f)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시사항과 함께 제공된다. 필립스에 공급되는 일체의 패키지 및 부품은 규제물질목록(Regulated Substances List; RSL)을 준수하며, RSL은 <http://www.philips.com/shared/global/assets/Sustainability/rsl.pdf> 또는 최초 서면 요청 시 공급자에 발송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립스에게 제공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립스의 요청 시, 필립스 RSL을 온전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BOMcheck에 선서함으로써 ROHS, REACH 및 기타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포함하여 핵심 규정의 준수를 공표하기 위해 BOMcheck([www.bomcheck.net](http://www.bomcheck.net))에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합의한다. 공급자는 또한 BOMcheck의 통지 또는 기타 미등록 통지에 따른 추후 RSL의 변경사항을 준수할 것이고, 현재 갱신된 필립스 RSL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필립스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지 수령 3개월 이내에 온전하게 준수할 것이다. 필립스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인도물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 (g) 필립스가 안전하게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제작물을 운송, 보관, 처리,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상품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9.2 위에서 열거한 보증은 단순한 예시이며,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보증, 공급자의 표준 보증 또는 필립스가 보유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또는 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보증은 상품의 인도, 검사, 승인, 대금 지급 또는 재판매 후에도 유효하고, 필립스 및 필립스의 고객에도 적용된다.

9.3 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제9.1조에 명시된 보증은 제4.2조에 따른 인도일로부터 36개월 또는 본 계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른 다른 기간 동안 존속할 것이다("보증기간"). 보증기간 내 수리 또는 교체된 상품은 동 상품에 대한 원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또는 수리 또는 교체된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된다.

## 10.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보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이 필립스의 권한 있는 임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승인되고 본 계약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상품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부분도 포함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 11. 하자, 불완전이행

- 11.1 상품, 서비스 또는 제작물에 하자(숨은 하자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기타 본 계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필립스는 공급자에 통지하고, 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한 여타 권리 또는 구제책과 별개로 필립스의 선택에 의하여:
- (a) 공급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거나;
  - (b) 공급자에게 대체 상품 또는 제작물의 배송을 요구하거나;
  - (c) 공급자에게 수리로 인한 하자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 (d) 계약을 철회하거나; 또는
  - (e) 실제 공급된 상품의 가액에 비례하여 금액을 감액한다. 이로 인하여 전액이 환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11.2 공급자는 하자 있는 상품의 수리, 교체 및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부담한 일체의 비용(검사, 처리 및 보관 비용 등)을 필립스에게 변상한다.
- 11.3 하자 있는 상품의 위험은 해당 통지일에 공급자에게 이전된다.

## 12.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12.1 본 계약의 이행에 사용되도록 필립스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해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필립스가 대금을 지급한 모든 기계, 도구, 도면, 사양, 원료 및 기타 재산 또는 재료는 필립스의 단독 배타적 자산이며,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필립스의 기밀 및 소유 정보로 한다. 또한, 전술된 자산은 필립스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필립스 소유임이 표시되며, 공급자가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하고, 필립스가 간헐적으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른 공급자의 주기적 재고 조사 대상이 되며, 필립스의 요청 시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명백하게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계, 기구 및 원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한다.
- 12.2 공급자는 상품과 서비스가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제3자(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포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12.3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구매는 필립스 및 필립스의 계열사에게 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기계, 도구, 설계,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모, 몰드, 스펙 또는 부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의 사용, 제작, 첨부, 마케팅, 판매, 리스, 라이선스, 배포 및/또는 기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철회불가능하며, 전세계에 미치며, 로열티가 없고 전액 지불된, 비전속적 및 영속적인 라이선스를 수여해야 한다.
- 12.4 필립스는 필립스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샘플, 데이터, 저작물, 자료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은 필립스의 재산이 된다. 공급자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본 제12.4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수행한다.
- 12.5 공급자는 필립스의 샘플, 데이터, 저작물, 자료, 상표 및 지적 재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도 보유하지 아니하며, 단독 또는 결합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필립스의 상표 또는 상호를 포함하는 패키지의 공급도 공급자에게 당해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상호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 상호 또는 기타 표시를 단독 또는 결합 사용하지 아니하며, 필립스가 승인한 상표, 상호 또는 기타 표시의 사용은 엄격하게 필립스의 지시사항 및 필립스가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12.6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도자료, 광고물, 실적 등에 필립스와 거래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다.

### 13. 지적재산권 면책

- 13.1 공급자는, 필립스 및 그 계열회사, 대리인, 직원 및 필립스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를,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단독 또는 결합하여 또는 그 사용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 손해 및 비용(이익 손실 및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하여 면책하거나, 또는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에 대해 방어해 주어야 한다.
- 13.2 필립스는 이러한 청구를 공급자에게 즉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통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통지의 지연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을 제공한다.
- 13.3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단독 또는 결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 (a) 필립스 또는 고객에 지속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부여하거나; 또는
  - (b)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적으로 또는 실용적이면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동등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교체 또는 변경한다.
- 13.4 공급자가 전술된 바에 따라 필립스에 지속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부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교체 또는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필립스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자는 지급된 대금을 필립스에 변상한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립스를 면책한다.

### 14. 면책

공급자는, 필립스, 그 계열회사, 대리인, 직원 및 필립스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필립스에게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지휘 또는 통제하에서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자의 작위, 부작위, 실책,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 본 계약 조항의 위반 또는 과실로 유발되거나, 유발된 것으로 주장됨에 따라 본 계약이 적용되는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이행완료 전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 조치,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청구, 요구, 손해배상, 판결, 채무, 이자, 변호사 보수, 여하한 종류 또는 성격(특별, 간접, 우발, 파생손해 등 포함)의 비용에 대하여 면책한다.

### 15. 법률 준수

공급자는 모든 공정 노동, 기회 균등 및 환경 관련 법률, 규칙, 규정 및 조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본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규정 및 조례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필립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고 상품 및 서비스가 연방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필립스에 판매되는 경우, 연방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삽입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관련 조달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공급자가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미국연방 규정 41 60-1.4장, 60-250.5 및 60-741.5 에 규정된 고용기회균등 조항이 준용된다.

### 16. 개인정보

- 16.1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 및 이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다음 각항을 준수하기로 합의 및 보증한다.
- (a)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타 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관련 국제 규정을 준수한다.

- (b) 개인정보를 오직 (i) 필립스를 대신하여 또는 이익을 위하여, (ii)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iii) 이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 또는 필립스로부터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iv) 필립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허가 또는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한다.
  - (c)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안, 기밀성, 무결성 및 존재를 유지한다.
  - (d) 개인정보의 분실, 무단 처리 또는 불법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물리적, 조직적 행정적 보안 조치, 절차, 관행 및 기타 보호 조치를 도입하여 유지하며, 개인정보를 (i) 보안 및 무결성에 위협 또는 위험 및 (ii) 분실, 권한없는 접근 및 취득 또는 사용 및 불법 처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그리고
  - (e)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필립스에 통지한다.
- 16.2 공급자가 (하)도급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업자는 (하)도급업자가 본 제 16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책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을 보장한다. 단 보호책은 16조의 기준보다 엄격해야 한다.
- 16.3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록이나 문서를 확실하게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후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의 무단 처리, 불법적 처리 또는 분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승인 및 확인한다.
- 16.4 공급자는 상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3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벌금, 손실 및 청구로부터 필립스 및 그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을 면책한다.

## 17. 수출규제 준수

- 17.1 공급자는 해당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 수출규제 법규정을 준수하며, 유럽연합, 미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가 수출 또는 재수출 시 수출 허가나 기타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여하한 국가에 이 같은 수출 허가나 정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정보, 상품,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 및 보증한다.
- 17.2 공급자는 공급된 정보, 상품,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술이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이고/이거나 자국의 수출규제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필립스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전술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의 범위(수출규제 법적 관할권, 수출규제 품목식별번호, 수출규제 허가 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상품분류 자동추적 시스템(Commodity Classification Automated Tracking System, CCATS)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해 필립스에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 17.3 공급자는 모든 관련 수출규제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 수출 허가 및 이와 유사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필립스와 필립스의 고객이 이 같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필립스에 제공한다.
- 17.4 공급자는 공급자가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필립스에 발생한 모든 청구, 책임, 형벌, 몰수 및 관련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필립스를 면책하기로 합의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필립스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 18. 세관규정 준수

- 18.1 연 단위로 또는 필립스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i) 수령 국가의 세관당국 및 (ii) 미국의 수출 허가 규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수출 허가 규정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상품 관련 공급자 원산지 신고서를 필립스에 제공한다. 특히 신고서에는 상품 또는 상품 일부가 미국에서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원산지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된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된 이중용도 상품 또는 달리 분류된 상품은 그 분류코드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 18.2 지역 또는 자유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 또는 기타 특혜협정의 적용 요건을 갖춘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특혜 원산지 자격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 증거(예: 공급자의 신고서, 특혜 원산지 증명서/운송장 신고서)를 제품 인도 시 함께 제공할 책임이 있다.
- 18.3 공급자는 모든 상품(상품에 표시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해당 상품 용기)에 원산지 국가를 표시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표시할 때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건을 준수한다. 상품 수입에 있어 공급자는 가능한 경우 필립스가 서류상 수입자가 되도록 한다. 필립스가 서류상 수입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 권리를 획득한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의 요청이 있을 시 수입 사실을 입증하고 필립스에 관세환급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필립스에 제공한다.

## 19. 책임의 제한

- 19.1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과실이나 악의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인적 상해에 대한 법정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할 수 없다.
- 19.2 상기 제19.1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필립스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 이론에 의해서도 이익이나 매출의 상실, 사업기회 상실, 이미지 손상 또는 데이터 분실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간접적, 우발적, 특별, 파생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는 필립스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던 경우에도 그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필립스는 공급자,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완수 시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필립스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0. 불가항력

공급자가 불가항력(예측할 수 없고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을 이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당 불가항력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무의 이행은 해당 불가항력 기간 동안 유예된다. 의무 불이행의 전후 상황에 의해 즉각적인 해지가 정당화되거나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상황이 30일을 초과해 지속되는 경우, 필립스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고지가 전달된 경우, 공급자는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공급자 측의 불가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력, 생산재료 또는 자원의 부족, 파업,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은 유행병이나 전염병, 공급자가 계약한 제3자의 계약 위반, 공급자의 재정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필요한 라이선스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허가나 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21. 계약의 종료 및 해제, 해지

- 21.1 본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필립스의 기타 권리 및 구제책과 별개로, 필립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 필립스의 선택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권한이 있다:
- (a)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지급불능, 법정관리, 청산, 채권자를 위한 양도 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 (b) 공급자가 파산 신청 또는 지급불능, 법정관리, 청산, 채권자를 위한 양도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 (c) 공급자가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중지하거나 중지한다고 위협하는 경우
  - (d)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립스가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자가 요청한 상품의 인도나 서비스의 수행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e) 공급자가 필립스가 요청하는 적절한 이행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1.2 필립스는 위 21.1조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2. 비밀유지

22.1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필립스로부터 또는 필립스를 대신하여 제공받거나 공급자가 필립스를 위하여 생성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공급자는 이와 같은 정보를 오직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의 정보에 대하여 공급자 자신의 비밀정보에 적용하는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필립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항상 합리적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일체는 필립스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공급자는 필립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를 즉시 필립스에 반환하고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22.2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취급한다.

## 23. 기타사항

23.1 공급자는 필립스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망을 포함한 신체의 손상에 대한 청구 및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500만 유로를 최저 한도로 하는 종합 또는 상업 일반책임보험(제조물배상책임, 재산 손해 및 대인 상해 책임 및 필립스가 요청하는 기타 책임 포함)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적절한 허가를 득하고 재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다. 공급자는 보험이 취소되거나 보험 혜택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이를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필립스에게 통지한다. 필립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장 범위 및 한도를 입증하는 보험 증명서 및 보험증권을 필립스에게 제공한다.

23.2 공급자는 필립스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로서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립스에 대한 공급자의 경제적 의존도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 간에 파트너십이나 합작투자회사 또는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3.3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하도급 등은 무효이며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23.4 필립스 그룹이 독립된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필립스는 필립스 그룹의 분사를 대비하여 공급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라이팅 또는 헬스테크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양수 받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필립스 관계사("양수 회사")에게 본 계약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권, 대체, 분할 또는 양도(이하 "양도")할 수 있다. 필립스는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서 상 모든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면제 및 면책된다. 이 면제 및 면책은 확정적이며, 필립스와 양수 회사의 관계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양사는 필립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양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23.5 필립스는 필립스가 보유하는 권리 및 구제책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본 계약상 또는 법률이나 형평법상 현재 또는 향후에 보유하게 될 기타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23.6 공급자는 일체의 제품 생산 중단 사실을 최종 주문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필립스에 서면통지 하며, 필립스 부품 번호, 대체품 및 최종 주문 및 선적일자를 동봉한다.

23.7 필립스가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을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을 지연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간의 사전 거래 경과와 상관없이 본 계약의 의미 해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조건의 포기, 동의, 변경 또는 개정은 필립스와 공급자가 서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3.8 본 구매 일반조건 또는 본 계약상 조항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나 향후 입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상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한다.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집행 불가능

판정을 받은 조항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의 본래 의도를 반영하는 유사한 의미의 조항으로 대체된다.

- 23.9 보증, 지적 재산,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결 시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된 본 계약의 모든 항목들은 위와 같이 존속한다.
- 23.10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해당 필립스 발주처가 소재한 국가 또는 주의 법률에 따른다.
- 23.11 공급자와 필립스는 (i) 필립스 발주처가 소재한 국가 또는 주의 관할법원, 또는 (ii)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 수주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거나, (iii)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제23.11이 적용되는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다. 공급자는 인적관할권 및 재판관할거부권(forum non convenience) 등에 관한 일체의 항변을 포기한다.
- 23.12 제23.11조에 따라 필립스가 선택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위반, 해지 또는 무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견 또는 청구는 오로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되어야 하며 공급자와 필립스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공급자와 필립스는 (i) 선임권이 프랑스 파리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있고, (ii) 중재인은 세(3)명으로 하며, (iii) 중재지는 필립스의 발주처의 관할지 또는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 수주처의 관할지로 하고, (iv)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하며, (v) 중재인들에 의해 적용될 중요 법률은 제23.10조에 따라 결정되는 법률로 하는데 동의한다.
- 23.13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립스 구매 일반조건

버전: 2015년 5월